

규약 변경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변경 대상 펀드

NO	펀드명칭
1	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
2	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3	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파워리서치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2. 변경 사항

1)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

항목	정정전	정정후
명칭	<u>프랭클린템플턴 코어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	<u>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<p>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<u>프랭클린템플턴 코어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"이라 한다.</p> 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자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 신규 자투자신탁이 설립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제40조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다.</p> <p><u>1. 프랭클린템플턴 코어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</u></p> <p><u>2.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코어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</u></p>	<p>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<u>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"이라 한다.</p> 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자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 신규 자투자신탁이 설립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제40조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다.</p> <p><u>1.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</u></p> <p><u>2.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파워리서치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</u></p>
<부칙> 제1조(변경계약의 시행일)		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1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

2)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항목	정정전	정정후
명칭	<u>프랭클린템플턴 코어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</u>	<u>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</u>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<p>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<u>프랭클린템플턴 코어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</u>"이라 한다.</p> 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</p> <p><u>1. 프랭클린템플턴 코어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	<p>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<u>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</u>"이라 한다.</p> 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</p> <p><u>1.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
제16조(투자목적)	이 집합투자기구는 모투자신탁인 <u>프랭클린템플턴 코어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 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이 집합투자기구는 모투자신탁인 <u>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 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<u>1. 프랭클린템플턴 코어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의 수익증권</u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<u>1.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의 수익증권</u></p>
제18조(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)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<u>프랭클린템플턴 코어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의 수익증권에 투자한다.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<u>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의 수익증권에 투자한다.</p>
<부 칙> 제1조(변경계약의 시행일)		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1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

3)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파워리서치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항목	정정전	정정후
명칭	<u>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코어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</u>	<u>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파워리서치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</u>
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<p>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<u>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코어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</u>"이라 한다.</p> 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프랭클린템플턴 코어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p>	<p>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<u>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파워리서치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</u>"이라 한다.</p> 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p>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프랭클린템플턴 코어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의 수익증권 (이하 "국내 주식형 모투자신탁" 이라 한다.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의 수익증권 (이하 "국내 주식형 모투자신탁" 이라 한다.)</p>
<부 칙> 제1조(변경계약의 시행일)		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1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

3. 효력 발생일

2011년 3월 21일

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규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